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7. 2.(금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기술혁신과	담당자	·과장 유병수, 사무관 강성호, 주무관 성명수 ·☎ (044)201-3564, 3565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건축 리모델링·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

- 30일 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 개정·고시 -




- 이젠 건축 리모델링, 토목·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 사업,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노후화된 교량, 터널,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, 성능개량(보수)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(턴키), 대안,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을 개정하고 7월 2일 고시하였다.
- 지금까지는 장대터널(3km 이상), 특수교량, 대형건축물(연면적 3만㎡ 이상),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,
 - 이번 개정안에 따라,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, 성능개량(보수)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

- 또한,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(BIM) 설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(ICT), 모듈러 시공, 토공 자동화기술,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하였다.
- 특히,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'수소경제로의 전환'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'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'에 맞춰 바이오 가스 공급시설(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)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하였다.
-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먼저,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, 터널, 항만, 철도 시설물의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하여 '시설물안전법'에 따른 1종 시설물, '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'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하고,
 -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·폐수(1만t/일 이상)처리 관로시설(연장 15 km 이상), 바이오가스 공급시설(연료전지 및 수소연료)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로이 포함하였다.
 -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(ICT), 모듈러 시공, 토공 자동화기술,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 시설에 포함하였다.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특히, 노후화된 교량, 터널,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, 공동주택 (21층 이상)이나 공공청사(연면적 2만㎡ 이상)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하였다

- 다만 성능개선,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*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.

*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·개발·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기술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개정내용

 토목	<p>(교량) 연장 500m 이상 또는 경간장 2개 이상이 50m 이상, 교각 높이가 70m 이상</p> <p>(터널) 연장 1,000m 이상 또는 방재 2등급 이상, 터널연장 300m 이상인 지하차도 교량·터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물(연장의 합이 1,000m 이상), 단일사업 연장 15km 이상인 대형 도로·철도시설(도로 4차로 및 철도 복선 이상)</p> <p>(항만) 계류시설, 외곽시설,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항만배후시설</p> <p>(철도) 철도차량기지, 노반·궤도·시스템 복합공정시설</p>
 건축	<p>성능개선을 위해 개량(건축물의 리모델링 포함)·증설확장·일부개축</p>
 플랜트	<p>(하수·폐수) (1만톤/일 이상)처리 관로시설(연장 15km 이상)</p> <p>(바이오가스 공급시설) (연료전지 및 수소연료)</p>

□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되어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